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16호
2022. 9. 26.(월)



목 차◆ **자치법규****[규 칙]**

제45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506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5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5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제45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2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립” 을 “수립, 디지털 정책” 으로, “비전전략수석” 을 “비전전략수석, 디지털수석” 로, “비전전략수석은” 을 “비전전략수석, 디지털수석은” 으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택공급기획관은 주거복지정책,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관하여 주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22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책과” 를 “균형발전기획관·균형발전정책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를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균형발전기획관은 도시 균형발전계획,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하여 균형발전본부장을 보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인사운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4급상당) 신설(제3조제2항) — (1명) 디지털 수석

◆ 서울특별시규칙 제4506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5호”를 “제5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6호) 중 “제5조제1항제6호”를 “제5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7호) 중 “제5조제1항제7호”를 “제5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6호”를 “제5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조례제5조제1항제7호”를 “조례제5조제1항제6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신기술 선정’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신기술 선정’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신기술 선정’ 과 관련된 규정 삭제(제2조제3항제3호, 제5조제2호 각각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5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유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²)
		(계 필지)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m²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m²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위원회 구성생략		동 의		반 대	
		()		()	
※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구역 또는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이나 조합 시행방식이 아닌 구역은 동의/반대 기재 불필요)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동의합니다.					
2000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 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여 주십시오(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1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도록 하여 조합설립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시민의 제도 인식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부진한 실정임.
- 이에 관련 서식에 추진위원회 구성절차 생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의 인식을 높이하고자 함(별지 제7호서식).

2. 주요내용

-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란을 추가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5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10년” 을 “5년” 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아래의 복원방법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 및 (다) 중 “120퍼센트” 를 각각 “100퍼센트” 로 하고, 같은 목 (3) 전단 중 “한다” 를 “하며, 가슴높이지름 6cm 이상의 입목을 식재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원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사고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제10조 관련)

1. 입목축적 비율의 정의

개발대상 필지의 입목에 대한 수종, 수고, 가슴높이직경, 본수를 ha당 조사결과로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평균입목축적(m^3) 적용 시 비율(100분율)로 산정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산출

가. 대상지 입목축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나. 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대상지 입목축적을 ha당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면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이 된다.

3.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평균생장률 적용)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산출한다.

4. 입목축적 비율 산출

$$\text{입목축적 비율} = \frac{\text{대상지 ha당 입목축적}}{\text{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times 100$$

[예 시]

□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방법 예시(평균생장률 적용)

- 2021.9.30.~12.31.까지: $148.97 m^3/ha$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그대로 적용)
- 2022년: $148.97 m^3/ha + (148.97 m^3/ha \times 2.3\%) = 152.40 m^3/ha$
- 2023년: $152.40 m^3/ha + (152.40 m^3/ha \times 2.3\%) = 155.91 m^3/ha$
- 2024년: $155.91 m^3/ha + (155.91 m^3/ha \times 2.3\%) = 159.50 m^3/ha$
- 2025년: $159.50 m^3/ha + (159.50 m^3/ha \times 2.3\%) = 163.17 m^3/ha$
- 2026년: $163.17 m^3/ha + (163.17 m^3/ha \times 2.3\%) = 166.92 m^3/ha$

※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 산출결과 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결정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 맞게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함(제3조의2제2항).

나.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의 복원기준 및 해제 절차를 조정 보완함(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5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조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공무원(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4조,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 중 제3호 서식부터 제10호 서식까지 및 제1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 5. 19.) 이후 법률의 조기 정착과 혼선 방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법률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2022. 6. 2. 일부개정),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 조항 삭제(현행 제8~14조, 제24조, 제28조 각각 삭제)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관련 용어 및 별지 신고 서식 삭제

(1) “이해충돌” 용어 정의 등 삭제(제2조, 제3조)

(2) 이해충돌 신고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3~10호 서식, 제16호서식 각각 삭제)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